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5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명	2 명
재적임원	8 명	2 명
참석임원	6 명	1 명

1.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1:00

(회의소집 통보일: 2025년 12월 9일)

2. 장 소: 광운대학교 화도관 202-1호

3. 참석임원

- 이사(6명): 조선영 이사장, 이종민 이사, 김기영 이사, 배일환 이사, 이항철 이사, 류희근 이사 (불참: 이종수 이사, 김영만 이사)
- 감사(1명): 왕영호 감사 (불참: 신혜성 감사)

4. 안 건

-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제2025-38호: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 제2025-39호: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
- ☐ 제2025-40호: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41호: 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 제2025-42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43호: 지정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건
- ☐ 제2025-44호: 2026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에 관한 건
-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간인			
----	---	---	---

5. 회의내용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입실함)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6명, 감사 1명)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 전, 윤도영 총장에게 대학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자, 윤도영 총장은 교원 및 직원 신규 채용 진행 상황 등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다.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퇴실함)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전차 이사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5-38호: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8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향철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1]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1: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사항

□ 제2025-39호: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9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로부터 법인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이세원 간사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다.

간인			
----	---	---	---

이세원 간사는 교수가 재직 경력 미달을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된 것에 대하여, 규정 제2호(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따른 실질적인 심의가 누락되었음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음을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위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하다. 또한, 교수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해 보이며, 재직 기간 요건과 별개로 학교 기여도에 대한 심의가 누락된 점을 언급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이항철 이사는 명예교수 추대 시 재직 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기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교 발전 기여도가 큰 경우 추대된 전례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건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다.

이종민 이사는 명예교수 추대가 단순한 근속 보상이 아니라 학교 기여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본질임을 역설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항철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명예교수 추대

연번	성명	소 속	심의결과		비고
			내용	추대일자	
1	유태용	인문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3. 1.	
2	최은하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3. 1.	
3	정용진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3. 1.	
4	최주엽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3. 1.	

- 교수의 건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호에 따른 특별 추천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절차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미비가 있으므로, 대학 측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하다.
- 향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심의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의 실명으로 표기 요청하기로 하다.

간인			
----	---	---	---

□ 제2025-40호: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40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장학정신 반영

이항철 이사는 지난 이사회에서 제기된 광운대학교 학칙 제1조 내 ‘장학정신’ 반영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다. 이에 조선영 의장은 설립자의 장학 정신과 교육 이념이 규정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대학 측에 지시하다.

▪ 행정조직 및 직제 개편

조선영 의장 및 이사들은 팀 신설 위주의 개편안이 인력 부족 및 팀장 겸직 문제를 심화시켜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다. 중장기 전략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다.

왕영호 감사는 조직 개편이 단편적인 팀 신설이 아닌 대학의 중장기 전략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 보수 및 수당 체계

조선영 의장 및 이사들은 교원 보수 규정 중 ‘별도로 정한다’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식의 포괄적 위임은 교육부의 유의사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규정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다.

▪ 교원 업적 평가

조선영 의장 및 이사들은 교육 점수를 봉사 점수로 대체 인정하는 개편안은 교수들의 행정 참여 저조 및 학교 발전 기여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

조선영 의장 및 이사들은 단(團) 하부에 본부(本部)를 두는 직급 체계가 대외적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직제 규정 개정(안),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안),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중 ‘조직 변경 관련’,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중 ‘봉사영역 점수 환산 관련’은 참석이사 6명 전원 반대로 부결되다.

간인			
----	---	---	---

- 그 외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김기영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다.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의결 결과

연번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2. 17.
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2. 17. (부칙 참조)
3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2. 17. (부칙 참조)
4	직제 규정 개정(안)	부결	-
5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부결	-
6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부분가결*	
7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안)	부결	-
8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부결	-
9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부분가결*	2025. 12. 17.
10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부결	-
11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부결	-
12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부결	-
13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2. 17.
14	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 내규 제정(안)	원안가결	2025. 12. 17.

※ 붙임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부분가결 안건 심의결과

(광운대학교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퇴실함)

□ 제2025-41호: 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41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감 임용(안) 및 중등학교 교원 전보(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4]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4: 중등학교 교원 임용사항

간인			
----	---	---	---

□ 제2025-42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42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향철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5]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5: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김기영 이사 퇴실함)

□ 제2025-43호: 지정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43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지정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배일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회계연도	기부자	기부금 종류	금액(원)	용도	비고
2025				대학 법정부담금 전출	이사회 승인 후 수령 예정
2024					-
2025					-
2025				화도기념사업회	-
2025				법인 운영	-
				초·중등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학교당 일백만원
				2025	법인 운영
합 계				1,128,400,000	

□ 제2025-44호: 2026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44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2026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안)을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5-43호(기부자 및 기부액 등)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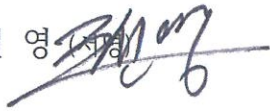
※ 이사회 회의록 간인 대표자 : 조선영 이사장, 이향철 이사, 류희근 이사
(2025학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6.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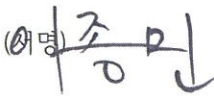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2시 35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인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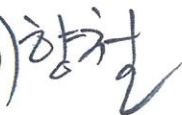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수 (서명)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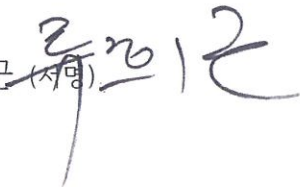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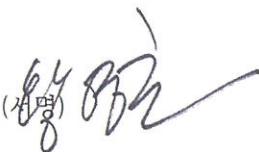
이 사 김 기 영 

이 사 김 영 만 (서명) 불참

이 사 배 일 환 
배 일 환

이 사 이 향 철 

이 사 류 희 근 

감 사 왕 영 호 

감 사 신 혜 성 (서명) 불참

2025. 12. 17.

간인			
----	---	---	---

[붙임 1]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사항

□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1명

연번	학과	직종	현 직급	성명	임용사항		
					직급	재임용기간	일자
1	스마트융합대학원 바이오헬스융합학과	특별전임 (교육B)	조교수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 재임용 대상자: 21명 (조건부 7명 포함)

연번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재임용기간	일자	
1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0. 8. 31.(4.5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2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1. 8. 31.(5.5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3	전자정보공과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0. 2. 28.(4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4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2. 2. 29.(6년)	2026. 3. 1.	
5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28. 8. 31.(2.5년)	2026. 3. 1.	
6	인공지능융합대학 로봇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2. 2. 29.(6년)	2026. 3. 1.	
7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2. 2. 29.(6년)	2026. 3. 1.	
8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융합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2026.3. 1.~ 2030. 2. 28.(4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9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2. 2. 29.(6년)	2026. 3. 1.	
10	경영대학 경영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2026. 3. 1.~ 2031. 2. 28.(5년)	2026. 3. 1.	
11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특별전임 (교육A)	조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12	참빛인재대학 스포츠상담재활학과	특별전임 (교육A)	조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13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특별전임 (교육A)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간인			
----	---	---	---

연번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재임용기간	일자	
14	교육대학원	특별전임 (교육A)	조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15	스마트융합대학원	특별전임 (교육A)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16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통신학과	특별전임 (연구A)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17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과	특별전임 (교육A)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18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조건부 재임용
19	경영대학 경영학부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20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21	글로벌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2026. 3. 1.~ 2029. 2. 28.(3년)	2026. 3. 1.	

※ 조건부 재임용: 2026년 2월 28일까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임용

□ 전임교원 정년퇴직 대상자: 9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1	전자공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2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3	전자융합공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4	전기공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5	환경공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6	전자바이오통신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7	산업심리학과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8	국제학부	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9	게임콘텐츠학과	부교수		명. 정년퇴직	2026. 2. 28.	

간인			
----	---	---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7조의 2(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 일반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상위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
제54조의 2(재수강 과목의 성적 평가 및 성적표기 방법) ①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의 상한선은 A0 이하로 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③ (생 략)	제54조의 2(재수강 과목의 성적 표기 방법) ① <u>재수강으로</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부 칙 <2025. 12. 17.></u> <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u>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의 제한 폐지

간인			
----	---	---	---

현행	개정안	비고
	<u>다만 제54조의2의 개정사항과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u> <u>제2조(교양이수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광운인되기’ 필수교양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입학 학년도별 총 교양이수 학점은 충족하여야 한다.</u> <u>제3조(대학, 학과(부,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 및 학과(부, 전공)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추후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전과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에 맞춰 다음 각호와 [별표 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 중별표를 참고하여 변경된 학과(부, 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1.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을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또는 국제금융전공으로</u>	

※[별표 1], [별표 6] 생략

간인			
----	---	---	---

[붙임3]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부분가결 안건 심의결과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의결 내용	비고
제7조제2항	단장의 임기 변경	가결	
제8조제3항	조직 변경 관련	부결	현행 유지
제7조의2(신설)	감사 신설	부결	

□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의결 내용	비고
제12조, 제13조, 제16조, 별표 1	봉사영역 점수 환산 관련	부결	현행 유지
부칙 제2조	경과사항	부결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의4제2항	소속 변경, JA 교원 관련	가결	

간인			
----	---	---	---

[붙임4]

중등학교 교원 임용사항

□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자격 종별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일자	비고
광운 중학교	교사			중등 1정	광운중학교	교감	2026. 9. 1.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사			중등 1정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감	2026. 9. 1.	

□ 중등학교 교감 임용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남대문중학교	교감		임. 교감(중임) 임기: 2026. 9. 1.-2028. 8. 31.	2026. 9. 1.	
광운중학교	교감		면. 교감	2026. 2. 28.	사임
			명. 교사	2026. 3. 1.	
	교사		명. 교감 직무대리 임기: 2026. 3. 1.-2026. 8. 31.	2026. 3. 1.	

간인			
----	---	---	---

□ 중등학교 교원 전보

소속	직급 (과목)	성명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중학교	교사 (수학)		명. 남대문중학교로 전보 (과목:수학)	2026. 3. 1.	
	교사 (영어)		명. 남대문중학교로 전보 (과목:영어)	2026. 3. 1.	
	교사 (체육)		명. 남대문중학교로 전보 (과목:체육)	2026. 3. 1.	
	교사 (체육)		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전보 (과목:체육)	2026. 3. 1.	
남대문중학교	교사 (국어)		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전보 (과목:국어)	2026. 3. 1.	
	교사 (수학)		명. 광운중학교로 전보 (과목:수학)	2026. 3. 1.	
	교사 (과학)		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전보 (과목:과학)	2026. 3. 1.	
	교사 (체육)		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전보 (과목:체육)	2026. 3. 1.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사 (과학)		명. 남대문중학교로 전보 (과목:과학)	2026. 3. 1.	
	교사 (체육)		명. 광운중학교로 전보 (과목:체육)	2026. 3. 1.	

간인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재산의 관리) 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u>각급 학교</u> 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 ----- ----- <u>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u> ----- -----.
제5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23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u>관할청의 승인일</u> 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 <u>해당 임원의 취임일</u> ----- -----.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정관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2.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각급 학교</u> 의 장·단기 발전계획 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라. <u>학교</u> -----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우직원 선발) ① 초·중등학교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일정년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u>자</u> 에 대하여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대우직원 선발) ① ----- ----- ----- <u>직원</u> 에 ----- -----.

간인			
----	---	---	---

② 제1항에 따라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국고보조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근속승진 임용) ① 초·중등학교의 일반직 7급 이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16조(포상) ① 이 법인과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포상한다.

1. 장기근속상

본 학원에서 10년, 20년, 또는 30년을 근속한 자에게는 학원 창립일을 맞아 이사장이 근속상을 시상한다.

2. 공로상

본 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3. 모범상

본 학원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전적인 창의를 제안한 자에게는 각 기관의 장은 모범상을 수여할

② ----- 직원에 -----

-----.

제15조(근속승진 임용) ① -----

-- 직원에 -----
-----.

② ----- 직원에 -----

-----.

제16조(포상)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구현과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관(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간인			
----	---	---	---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① 법인 및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산하기관별로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중 법인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상: 본 학원에서 10년, 20년 또는 30년간 근속한 개인

2. 공로상: 본 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모범상: 본 학원에서 직무 수행, 학업 또는 학생 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③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급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법인 포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제2항 각 호 외의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조에도 불구하고 화도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화도상에 관한 사항은 「화도상 시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규정의 제정 및 적용)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간인			
----	---	---	---

<신 설> 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u>대해</u> <u>서는 대학교의</u>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u> <u>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u> 제20조(권한의 위임) <u>법령과</u> 정관 및 이 세칙 에 <u>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 시행 및</u> <u>법인 운영에 필요한</u>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 임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u>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제</u> <u>6조제2호나목에서 정한 제규정의 제정·개</u> <u>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u> <u>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의</u> <u>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u> <u>행한다.</u> ③ ----- <u>관한</u> <u>사항은 대학교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u> <u>-----.</u> 제19조(세칙의 개정 및 폐지) 이 세칙을 개정 <u>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u> <u>결을 거쳐야 한다.</u> 제20조(권한의 위임) <u>법령, -----</u> <u>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u> <u>----- 필요한 세부 -----</u> <u>--. 다만,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u> <u>사항은 제외한다.</u>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2월 17일 <u>부터 시행한다.</u>
--	---

간인			
----	---	---	---